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취득세(부동산) 부과취소(경정)결정 (*****)

취득세(부동산)를 지방세기본법 제5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경정처리하고자 합니다.

1. 납 세 자 : *****

2. 과세물건 : *****

3. 경정사유 :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 부속토지 취득하고, 신고납부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【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】 규정에 근거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바, 기 납부한 취득세를 일부 감액코자 함.

세 목	당 초	취소(경정)	차 액	비 고
취득세	78,420,000원	26,594,040원	51,825,960	***** *****
농어촌특별세	2,786,000원	950,640원	1,835,360	
지방교육세	7,842,000원	2,659,400원	5,182,600	
합 계	89,048,000원	30,204,080원	58,843,920	

- 첨부 : 1. 부과취소(경정)결정서 및 내역서.
 2. 경정청구서 및 감면신청서.
 3. 임대사업감면 산출내역서. 끝.

